

부속서 V

제2.1조제1항다호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제 1 조

표 1에 명기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은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표 1

HS 호	HS 세번	상품 설명
02.08	ex 0208.40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고래의 것 ¹⁾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5.04	ex 1516.10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²⁾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16.03	ex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³⁾ - 고래고기·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⁴⁾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3.01	ex 2301.10 2301.20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수지박 -- 고래의 것 ⁵⁾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23.09		사료용 조제품 - 기타 -- 어류 가용성 물질

1) 고래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에 의하여 적용된다.

2) 각주 1을 참조

3) 각주 1을 참조

4) 각주 1을 참조

5) 각주 1을 참조

제 2 조

이 협정 발효일에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제3조 및 제4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표 1에 명기된 상품의 수입에 대한 모든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제 3 조

리히텐슈타인공국의 영역을 포함하여 스위스는 표 2에 명기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표 2

HS 세번	상품 설명
ex 15.04 및 ex 1516.10	식용을 위한 유지
ex 2301.10 및 ex 2301.20	동물사육용 식용 재료
ex 2309.90	동물사육용 식용 재료

제 4 조

1. 대한민국은 제2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표 3에 명기된 상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2. 표 3에 “B1”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75퍼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퍼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5퍼센트로

- 2009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3. 표 3에 “B2”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83퍼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7퍼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퍼센트로
-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4퍼센트로
-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7퍼센트로
- 2011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4. 표 3에 “B3”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87퍼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75퍼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2퍼센트로
-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퍼센트로
-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7퍼센트로
- 2011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5퍼센트로
- 2012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2퍼센트로
- 2013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5. 표 3에 “B4”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91퍼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82퍼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73퍼센트로
-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4퍼센트로

-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5퍼센트로
- 2011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45퍼센트로
- 2012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6퍼센트로
- 2013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7퍼센트로
- 2014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8퍼센트로
- 2015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9퍼센트로
- 2016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6. 표 3에 “TRQ”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다음에 따라 관세율할당 제도를 적용한다.

가. 연간 총 할당량은 500 메트릭 톤이 된다.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해당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할당량 내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무세화된다.

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해당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할당량 외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대한민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적용된다.

라. 가호 및 나호의 목적상, 관세율할당은 수입 당사국이 시행한다. 관세율할당은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과 협력하여 관리하고, 총 할당량 비율은 수입 당사국이 배분한다.

마. 관세율할당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년째부터 검토된다.

7. 표 3에 “R”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의 철폐와 점진적 철폐일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7년 이내에 이 협정의 전반적 목적을 인식하며, 공동위원회에서 검토된다.

표 3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40000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⁶⁾	30	R
0301	활 어		
030110	관상용의 것		
0301101000	금잉어	10	R
0301102000	열대어	10	R
0301109000	기 타	10	R
03019	기타의 활어		
030192	뱀장어(앵겔라종)		
0301921000	실장어	10	R
0301929000	기타의 것	30% 또는 1,908원/kg 중 큰 것	R
0301930000	잉 어	10	R
030199	기 타		
0301992000	방 어	10	R
0301994000	돔	45% 또는 3,292원/kg 중 큰 것	R
0301995000	붕장어	10	R
0301996000	갯장어	10	R
0301997000	먹장어	10	R
0301998000	넙치류	10	R
03019990	기 타		
0301999010	능성어	10	R
0301999020	복 어	10	R
0301999030	틸라피아	10	R
0301999040	볼락(적어 포함)	10	R
0301999050	농 어	45	R
0301999060	송 어	10	R
0301999070	미꾸라지	10	R
0301999080	메 기	10	R
030199909	기 타		

6) 각주 1을 참조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10	R
0301999092	붕 어	10	R
0301999094	초 어	10	R
0301999095	민 어	36	R
0301999099	기 타	10	B2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23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위누스>펠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B4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20	B2
03026	기타 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2610000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20	B2
0302640000	고등어(스콥버스콥브루스·스콥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콥버자포니쿠스)	20	B2
0302650000	곰상어와 기타상어	20	B2
0302660000	뱀장어(앵귤라 종)	20	B2
030269	기 타		
0302691000	명 태	20	B3
0302692000	방 어	20	B4
0302693000	갈 치	20	B4
0302694000	돔	20	B4
0302695000	붕장어	20	B4
0302696000	갯장어	20	B4
0302697000	전갱이	20	B4
0302698000	꽁치(학꽁치 포함)	20	B4
03026990	기 타		
0302699010	삼 치	20	B4
0302699020	복 어	20	B4
0302699030	병 어	20	B4
0302699040	아 귀	20	B2
030270	간장과 어란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31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차비차·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10	B2
0303190000	기 타	10	B2
03032	기타 연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220000	대서양연어(살모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후코)	10	B1
0303290000	기 타	10	B4
03033	넙치류(플루로 넥티대·바디대·사이노글로시대·솔레이대·스코프탈미대·시타리대).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	10	B2
0303390000	기 타	10	B2
03034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펠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0	B2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10	B2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10	B2
0303490000	기 타	10	B2
030360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10	B2
03037	기타 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710000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0	B2
0303740000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10	TRQ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10	B2
03037800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포피키스종)	10	B2
030379	기 타		
0303791000	명 태	30	R
0303792000	은대구	10	B4
0303793000	갈 치	10	B4
03037940	돔		
0303794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10	B2
0303794090	기 타	10	B2
0303795000	붕장어	10	B4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3796000	조 기	10	B4
0303797000	전갱이	10	B3
0303798000	꽁치(학꽁치 포함)	40	R
03037990	기 타		
0303799010	삼 치	10	B4
0303799020	복 어	10	B4
0303799030	보리멸	10	B4
0303799050	달고기	10	B2
0303799060	임연수어	10	B2
0303799070	볼락(적어 포함)	10	B2
0303799080	새꼬리 민태	10	B4
030379909	기 타		
0303799091	아 귀	10	B2
0303799092	먹장어(대서양, 태평양)	10	B2
0303799093	홍 어	30	R
0303799094	밀크피쉬	10	B2
0303799095	민 어	70	R
0303799096	가오리	10	B4
0303799097	까나리	10	B4
0303799098	이빨고기	10	B4
0303799099	기 타	10	B2
030380	간장과 어란		
0303801000	간 장	10	B4
03038020	어 란		
0303802010	명 란	10	B4
0303802090	기 타	10	B1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10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41010	피레트		
0304101010	붕장어의 것	20	B4
0304101020	가자미의 것	20	B4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4101030	참다랑어의 것	20	B2
030420	2. 냉동한 피레트		
0304201000	명태의 것	10	B4
0304202000	붕장어의 것	10	B4
0304204000	가자미의 것	10	B4
0304205000	참다랑어의 것	10	B2
0304206000	이빨고기의 것	10	B4
0304207000	틸라피아의 것	10	B4
0304209000	기 타	10	B1
030490	3. 기타		
03049010	냉동 연육		
0304901010	명태의 것	10	B4
0304901090	기 타	10	B4
0304909000	기 타	10	B3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3052040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란		
0305204010	명태의 것	20	B4
0305204020	조기의 것	20	B4
0305204030	청어의 것	20	B4
0305204090	기 타	20	B1
03054	훈제한 어류, 피레트를 포함한다.		
030549	기 타		
0305491000	멸 치	20	B4
0305492000	명 태	20	B4
0305499000	기 타	20	B2
03055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030559	기 타		
0305591000	상어 지느러미	20	B4
0305592000	멸 치	20	B4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5593000	명태(복어)	20	B4
0305594000	조기(굴비)	20	B4
0305595000	복 어	20	B2
0305596000	갯장어	20	B2
0305597000	까나리	20	B4
0305599000	기 타	20	B2
03056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20	B2
030563	멸치(엔그로리스 중)		
0305631000	멸치젓	20	B2
0305639000	기타의 것	20	B4
030569	기 타		
0305693000	갈 치	20	B4
0305694000	정어리	20	B2
0305695000	고등어	20	B4
0305696000	조 기	20	B4
0305697000	전갱이	20	B3
0305698000	꽁치(학꽁치 포함)	20	B2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3061	냉동한 것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20	B2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1000	새우살	20	B2
0306139000	기 타	27	
	- 북쪽분홍새우 종류		B1
	- 북쪽분홍새우 종류 이외		R
0306142000	왕 게	20	B2
0306143000	꽃 게	20	B4
0306149000	기 타	14	B2
03062	냉동하지 아니한 것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6232000	건조한 것	20	B4
030623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55% 또는 363원/kg 중 큰 것	
	- 북쪽분홍새우 종류		B1
	- 북쪽분홍새우 종류 이외		R
030624	게		
0306241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6241010	꽃 게	20	B4
0306241020	대 게	20	B4
0306242000	건조한 것	20	B2
030624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B2
030629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291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B2
0306292000	건조한 것	20	B2
0307	연체동물(껍테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030710	1. 굴		
03071010	가.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101090	(2) 기타	20	B2
0307102000	나. 냉동한 것	20	B3
0307103000	다. 건조한 것	20	B2
0307104000	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B2
03072	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펙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B2
030729	기 타		
0307291000	냉동한 것	20	B3
0307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B2
03073	3. 홍합(미틸루스종·페르나종)		
03073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B2
030739	기 타		
0307392000	건조한 것	20	B2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74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		
030741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412000	오징어	10	B2
030749	기 타		
03074910	냉동한 것		
0307491010	갑오징어	10	B4
0307491020	오징어	27	R
030749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0	B4
0307493000	건조한 것	10	B4
03075	5. 문어(옥토푸스종)		
03075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B4
030759	기 타		
03075910	냉동한 것		
0307591010	문 어	20	B4
0307591020	낙 지	20	B4
0307591030	쭈꾸미	20	B4
0307591090	기 타	20	B4
0307592000	건조한 것	20	B2
0307599000	기 타	20	B4
03079	7. 기타[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3079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911	연체동물		
03079111	백 합		
0307911190	기 타	20	B4
0307911200	전 복	20	B4
0307911300	소 라	20	B2
0307911400	진주조개	20	B2
0307911500	피조개	20	B4
0307911700	개아지살	20	B4
0307911800	바지락	20	B4
03079119	기 타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7911910	재 첩	20	B4
0307911990	기 타	20	B4
03079190	기 타		
0307919010	성 게	20	B2
0307919020	해 삼	20	B4
0307919030	우렁헝이	20	B4
0307919090	기 타	20	B4
030799	기 타		
0307991	냉동한 것		
03079911	연체동물		
0307991110	새조개	20	B2
0307991120	개 랑조개	20	B4
0307991130	바지락	20	B4
0307991140	개아지살	20	B4
0307991150	피조개	20	B4
0307991160	소 라	20	B2
0307991190	기 타	20	B4
03079919	기 타		
0307991910	해 삼	20	B2
0307991920	우렁헝이	20	B2
0307991990	기 타	20	B2
0307992	건조한 것		
03079921	연체동물		
0307992110	개 랑조개	20	B2
0307992120	개아지살	20	B2
0307992190	기 타	20	B4
03079929	기 타		
0307992920	해 삼	20	B4
0307992990	기 타	20	B2
0307993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03079931	연체동물		
0307993110	개 랑조개	20	B2
0307993120	바지락	20	B4
0307993130	소 라	20	B2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7993190	기 타	20	B4
03079939	기 타		
0307993910	성 게	20	B4
0307993920	해 삼	20	B2
0307993930	해파리	20	B4
0307993990	기 타	20	B2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⁷⁾		
1504200000	2.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3	B1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603003000	어류의 엑스	30	B2
1603004000	어류의 즙	30	B2
1603009000	기 타 ⁸⁾	30	B2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연 어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2
160412	청 어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2
1604129000	기 타	20	B2
160413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스링 또는 스프랫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4
1604139000	기 타	20	B2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 종)		
160414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414101	다랑어		
1604141011	기름담근 것	20	B2
1604141019	기 타	20	B2
160414102	가다랑어		
1604141021	기름담근 것	20	B2
1604141022	보일드한 것	20	B2
1604141029	기 타	20	B2
160414103	버니토우		
1604141039	기 타	20	B2
1604149000	기 타	20	B4

7) 각주 1을 참조

8) 각주 1을 참조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160415	고등어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4
1604159000	기 타	20	B4
160416	멸 치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4
1604169000	기 타	20	B2
160419	기 타		
160419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4191010	꽂 치	20	B2
1604191020	전갱이	20	B2
1604191030	뱀장어	20	B4
1604191090	기 타	20	B2
16041990	기 타		
1604199010	쥐치포	20	B4
1604199090	기 타	20	B2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20	B2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20	B2
16042040	생선묵		
1604204010	게맛의 것	20	B2
1604204090	기 타	20	B2
1604209000	기 타	20	B4
160430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01000	캐비아	20	B2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10	게		
16051010	게 살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2
1605101020	훈제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20	B2
1605101090	기 타	20	B4
1605109000	기 타	20	B4

HS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160520	새우와 보리새우		
16052090	기 타		
1605209020	브레드한 것	20	B2
1605209090	기 타	20	B1
160590	기 타		
1605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5901010	굴	20	B2
1605901020	홍 합	20	B2
1605901030	바지락	20	B4
1605901080	오징어	20	B4
160590109	기 타		
1605901091	전 복	20	B2
1605901099	기 타	20	B4
16059020	훈제한 것(다만, 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1605902010	오징어	20	B4
1605902090	기 타	20	B4
16059090	기 타		
1605909010	조미오징어	20	B4
1605909020	해 삼	20	B4
1605909030	콜뱅이	20	B4
1605909040	홍 합	20	B4
1605909090	기 타	20	B4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⁹⁾		
230120	2.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5	B1
2301209000	기 타	5	B2

9) 각주 1을 참조

제 5 조

기술 협력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전반적 목적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국가 정책목적에 따라 수산업에 대한 공동작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다.

2. 특히, 당사국들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공동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통관심 사업을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공통 사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대화와 당사국들의 정책과 활동의 개발에 대한 정보의 교환

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수산업 및 양식업에 대한 기술적 전문식견 및 경험의 공유

다. 노르웨이 연구선, 수산업 시설 및 유통 회사에서 어부 및 학생의 훈련. 그리고

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 자료, 통계, 정보 및 수산업 전문가의 교류

3.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공동작업반은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작업계획을 작성한다.